



2022년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기본 조사 】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현황 파악을 위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지원 등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사의 답변은 장애인고용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등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사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응답 내용은 반드시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장애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통계부**

☎ 031-728-7108 F 050-3470-0904
@ survey@kead.or.kr

조사기관 **닐슨아이큐코리아(유)**

☎ 02-2122-7267 F 02-6280-7267
@ hyekyung.ko@nielseniq.com

응답 시 유의사항

- 본 조사의 응답 단위는 본사, 지사, 영업소 등을 모두 포함한 **기업체 단위**입니다.
- 따라서 개인기업체는 해당 사업체를 기준으로, 법인기업체는 **동일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를 합산한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의 기준 시점은 **지난해 말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기업체 일반 현황, 근로자 수 현황 등 모든 응답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은 **매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유급으로 근무하는 귀사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월 16일 이상 유급으로 근무시 상시근로자로 인정)
- 별도 안내문이 없는 경우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문항마다 설명과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기업체 개요 (2021년 12월말 기준)

A1 기업체명		A2 국가·지자체	① 해당 → 종료 ② 비해당 → 진행
A3 주사업 (사업내용)		A3-1 산업분류코드	□□□ (소분류 코드 3자리까지)

- ☞ 1) 기업체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상 명칭을 그대로 응답해주세요.(예시: (주)○○○○, □□□기업)
- ☞ 2) 국가·지자체 : 재직자 대부분이 공무원 신분을 갖는 정부부처 등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① 해당'으로 판단(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는 산하 공공기관은 제외)
- ☞ 3) 주사업 : 기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투입, 생산과정, 산출)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응답해주시고, 사업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2021년 1년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A4 조직형태	① 개인기업체	→	A4-1 사업체 개수	① 단독사업체
	② 회사법인			② 다수사업체
	③ 회사이외법인			



① 개인기업체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체(단독 및 공동경영 가능)
② 회사법인	상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③ 회사이외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사립학교, 의료법인, 특수법인, 종교재단, 사단법인 등)



① 단독사업체	다른 장소에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 단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
② 다수사업체	동일한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공장, 지점, 지사, 영업소 등을 두고 있는 기업체

A5 지역 (본사 소재지)	시(도)	구(시/군)	A6 설립년도	□□□□ 년
-----------------------	------	--------	----------------	--------

- ☞ 5) 지역 :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 6) 설립년도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 또는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A7-1 대표자 성별	① 남 ② 여	A7-2 대표자 장애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	---------	-----------------------	-----------

- ☞ 기업체의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주 대표자 1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 7-2) 장애유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해 '① 있음'으로 판단

A8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여부

구분		① 해당	② 비해당	
A8-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직업장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A8-2		근로사업장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A8-3	장애인 표준사업장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A8-4	장애인 기업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A8-5	사회적 기업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1) 보호직업장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밖의 경쟁적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2) 근로사업장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사업장
4) 장애인 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기업
5)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B. 근로자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 ☞ 지난해 말 기준 귀 기업체(본사, 지점 등 모두 포함한 법인)의 근로자 수와 그 중 장애인 근로자 수를 응답해주세요.
- ☞ 근로자는 상용임사일용 지위와 관계없이 매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장애인근로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를 인정받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1~7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B9 전체 (상시)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① 소계 (②+③)	② 남	③ 여
B9-1 전체 상시근로자 수	명	명	명
B9-2 그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명	명	명



※ **상시근로자** : 상용직, 임사직, 일용직 등을 포함해 귀 기업체에서 매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단, 중증장애인은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6일 이상 근무 했다면 상시근로자에 해당)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상이등급 1~7등급을 받고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근로자

- ☞ 지난해 말 기준 귀 기업체의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를 **장애유형·성별**로 구분해 응답해주세요.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나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유형을 기준으로 응답
- ☞ 2가지 이상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주장애를 기준으로 응답
- ☞ **지적장애 : 구 정신지체, ***자폐성장애: 구 발달장애

B10 장애인 (상시)근로자 현황

(단위 : 명)

장애유형	성별	전 체	
		남	여
등록 장애인	B10-1 지체*		
	B10-2 뇌병변		
	B10-3 시각		
	B10-4 청각		
	B10-5 언어		
	B10-6 지적**		
	B10-7 정신		
	B10-8 자폐성***		
	B10-9 신장		
	B10-10 심장		
	B10-11 호흡기		
	B10-12 간		
	B10-13 안면		
	B10-14 장루요루		
	B10-15 뇌전증		
B10-16 국가유공자			
계			



■ 장애유형표

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세부분류)
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관절에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이 있는 사람
②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③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 결손 장애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④ 청각장애	청력 장애, 평형 기능 장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이면서 다른 귀가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⑤ 언어장애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장애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⑥ 지적장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⑦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⑧ 자폐성장애	소아기 지폐증, 비전형적 지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⑨ 신장장애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⑩ 심장장애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⑪ 호흡기장애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제한성폐질환, 만성환기장애질환군, 만성폐혈관질환군 등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⑫ 간장애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간 이식 등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⑬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⑭ 장루·요루장애	결장루, 회장루, 요루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사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⑮ 뇌전증 장애	단순 부분발작, 복합부분발작, 전신발작, 강직간대성발작, 근간대성발작, 강직성발작, 간대성발작, 무긴장성발작 등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⑯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사람

C. 응답자 정보

응답자	근무부서		핸드폰 번호	
	성명		팩스번호	
	직책		E-Mail	
조사기관	조사원 성명		관리자 확인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